|  |  |  |
| --- | --- | --- |
| **재정부, 세무총국의**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판정기준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4호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관철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하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 납세연도 중 중국 경내 누적 거주가 만 183일인 경우, 만약 이전 6년 동안 중국 경내에 매년 누적 거주일수가 모두 만 183일이고 어떠한 1개 연도에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연도 원천이 중국 경내와 경외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전 6년의 어떠한 1년 중 중국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 납세연도 원천은 중국 경외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한 소득이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앞서 말한 이전 6년은 해당 납세연도의 전년도부터 6년 전까지의 연속 6개 연도를 뜻하며, 이전 6년의 개시연도는 2019년(포함)이후 연도부터 계산한다.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1개 납세연도 내 중국 경내 누적 거주일수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 누적 체재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중국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일 경우, 중국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고, 중국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일 경우, 중국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는다.3.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를 특별히 공고한다.재정부세무총국2019년 3월 14일 |  | **财政部、税务总局****关于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居住时间****判定标准的公告**财政部、税务总局公告2019年第34号 为贯彻落实修改后的《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和《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现将在中国境内无住所的个人（以下称无住所个人）居住时间的判定标准公告如下：　　一、无住所个人一个纳税年度在中国境内累计居住满183天的，如果此前六年在中国境内每年累计居住天数都满183天而且没有任何一年单次离境超过30天，该纳税年度来源于中国境内、境外所得应当缴纳个人所得税；如果此前六年的任一年在中国境内累计居住天数不满183天或者单次离境超过30天，该纳税年度来源于中国境外且由境外单位或者个人支付的所得，免予缴纳个人所得税。　　前款所称此前六年，是指该纳税年度的前一年至前六年的连续六个年度，此前六年的起始年度自2019年（含）以后年度开始计算。二、无住所个人一个纳税年度内在中国境内累计居住天数，按照个人在中国境内累计停留的天数计算。在中国境内停留的当天满24小时的，计入中国境内居住天数，在中国境内停留的当天不足24小时的，不计入中国境内居住天数。三、本公告自2019年1月1日起施行。　　特此公告。财政部 税务总局2019年3月14日 |